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42 발의연월일: 2023. 9. 5.

발 의 자:이해식・안호영・민병덕

진선미 · 서영교 · 임호선

한병도 · 김영배 · 송재호

이용빈 · 노웅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있으며, 법제처는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자동차도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견을 제시함.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법제처 해석에 있어 논란도 지속되고 있음.

이에 현장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어린이통학버스에 제외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장난이나 놀이로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사례가 발생함.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 조제23호, 제12조제4항 및 제7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에"를 "등(현장체험학습 등 시설밖에서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단속을"을 "단속과 어린이의 안전을"로,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곳에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학교 등에서의 교통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교통안전교육 실시 에 관한 사항
- 2. 학교 교통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23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u>등에</u>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등(현장체험학습 등 시설밖에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서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
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	한다)에
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	
한다.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24. ~ 33. (생 략)	24. ~ 33. (현행과 같음)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해제 및 관리) ① ~ ③ (생략)
-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th>
 설>

 ⑤
 (생
 략)

 <신</td>
 설>

·해제 및 관리) ① ~ ③ (현	
행과 같음)	
4	
<u>단속과</u>	
<u> 어린이의 안전을</u>	
-곳에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우	
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⑤ (현행과 같음)	
세73조의2(학교 등에서의 교통안	
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	
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	
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 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교통안전교 육 실시에 관한 사항
- 2. 학교 교통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교육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교통안전 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 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